

2024. 1. 25(목). 10:00
제300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정애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어 공공질서 저해 및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의2)
- 나. 위원회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다.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입법예고 결과 ('24. 1. 16. ~ 1. 22.)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당연직 위원 구성의 경우 지난 조직개편과 업무 이동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⑤ 《생략》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